

접경지역 종합 개발을 통한 남북 상생 구조 구축 방안

이해정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접경지역은 국가 간의 영토적 경계가 되는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지역을 지칭하며, 주권국가의 공간적 관할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범위로서 국가 간 영토나 공해를 가르는 경계선에 접한 지역을 의미한다. 접경지역의 경계선인 국경선은 일반적으로 산맥, 하천, 호수 등의 자연적 지형이나 지구의 경도, 위도 등의 인위적인 것을 이용하여 그어지나, 국가 간 조약 체결을 통해 설정되기도 한다.¹⁾

한반도의 접경지역은 크게 DMZ, 민간인통제보호구역, 접경지역으로 구분된다. DMZ(Demilitarized Zone : 비무장지대, 907km²)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측으로 각각 2km 이내 지역을 의미하는데,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에 의해 비무장지대로 지정되었다.²⁾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한반도의 DMZ는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로 남아있다.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DMZ 내에는 출입이 불가하고, 건축물 건축, 자원 조사 등을 추진할 경우 남북간 협의 및 UN군 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다.³⁾ DMZ의 전체면적은 처음에는 248km²×4km=992km²이었으나, 현재는 약 907.3km²로 축소되어 한반도 전체의 0.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이 각각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하여 DMZ가 좁아진 결과이며, 현재 남측은 유엔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민간인통제보호구역(민통선, 1,760km²)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 내로 설정하고 있다.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은 휴전당시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전투배치선을 중심으로 강화군의 끝섬에서 고성군의 명호리를 잇는 육지 248km와 서해 백령도까지의 해상 약 200km에 설치된 선이다. 민간인통제보호구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군부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접경지역(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총 6,216km²로 규정)⁴⁾은 남한에서는

1) 접경지역은 경계와 맞닿은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경계, 변경, 변방, border, boundary, frontier, periphery, march 등으로 표현됨.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하고자 함. 손기웅 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통일연구원, 2010. p.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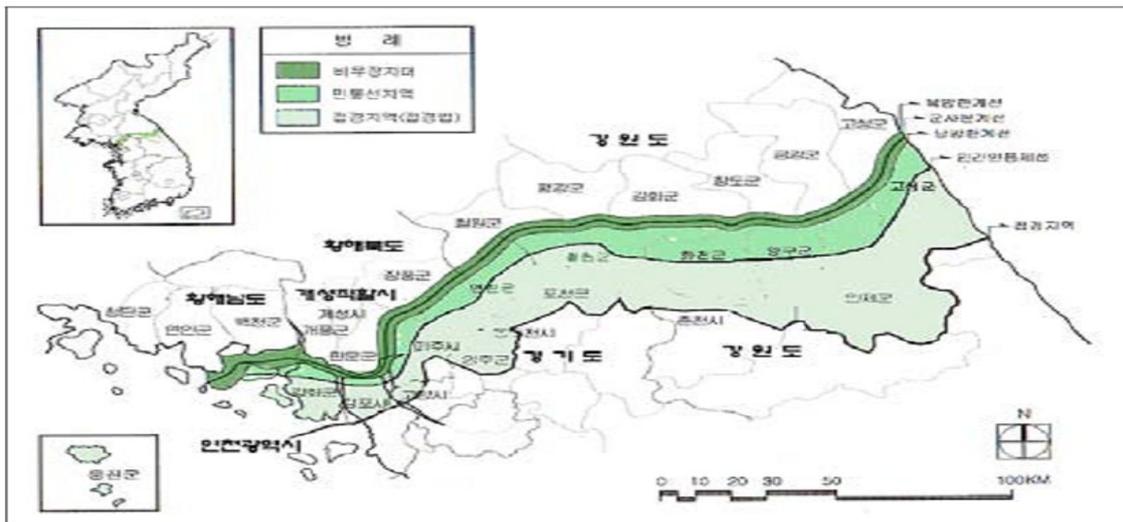
2) 성현찬, 『DMZ 일원 자연환경보전 생태관광 추진방향 설정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 pp. 9~10 참조.

3) 정전협정 제1조 제1항 : “한 개의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국간에 한 개의 DMZ를 설치한다. 한 개의 DMZ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민간인통제선 이남 25km 이내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접경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으로는 인천시 2개 군과 경기도의 7개 시·군, 강원도의 6개 시·군이 포함된 총 15개 시·군이 있다. 한편, 북한의 접경지역은 우리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북방한계선으로부터 일정 지역에 민간인 여행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접경지역 개념도 >

북방한계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	2km		
남방한계선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	2km		
민간인통제선	민통선 이북 지역 (통제보호구역)		10km	
접경지역				25km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 - DMZ 일원 관광활성화』 201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p. 3.

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 - DMZ 일원 관광활성화』 201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p. 3.

한반도 접경지역 개발의 의미⁵⁾

한반도 접경지역 개발의 의미는 크게 군사적, 생태적, 경제적, 역사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접경지역은 군사적으로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무장지대'의 원래 목적에 따른 안보 유지와 완충 지대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상호 감시 체제하의 격리 공간을 뚫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고, 기습 의도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 민간인 통제선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 외곽 지역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치하여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생태적으로는 전쟁으로 파괴된 자연 생태계가 인간의 간섭 없이 자기 조절로 복구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접경지역에 대한 생태조사 결과 67종의 멸종 위기종과 16종의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2,716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접경지역은 생태계의 보고이며, 특히 세계적인 희귀종인 두루미와 저어새 등의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어 국제적 관심이 높다.⁷⁾

< 접경지역의 생물 다양성 >

구분	서식 동식물 종수		DMZ 일대 비율(%)	비고
	남한 전체	DMZ 일대		
유관속 식물	3,161	1,170	37	고유종 41종, 희귀종 40종
어류	135	83	61	고유종 18종
양서류	15	10	66	
파충류	29	13	48	
조류	383	해안 34, 서쪽해안 101, 중앙 56, 해안 51		멸종위기종 :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두루미, 재두루미, 개리, 청다리도요사촌, 황새
포유류	76	51	67	

자료 : 박은진, "DMZ 보전 패러다임의 전환", 『경기논단』 2008년 봄호, 경기개발연구원, p. 134. 참조.

경제적으로는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를 단절시키면서 남북간 물적, 인적 교류를 단절시켰으며, 반도국가로서 중국과 러시아 대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왔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DMZ는 한반도의 중심 허리를 단절시키는 공간으로 우리나라 중부 지방의 산업과 사회, 문화를 단절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의 근접

5) 박은진, "DMZ 보전 패러다임의 전환", 『경기논단』 2008년 봄호, 경기개발연구원, pp. 136~139 및 손기웅, 『DMZ 평화적 이용방안 - 비판적 고찰과 실천적 추진방안 -』, 강원발전연구원, 2008. pp. 17~22 참조.

6) 환경부, 『비무장지대일원 생태계보전대책 추진』, 국정브리핑 보도자료 2005. 8. 25일자 참조.

7) 미국 DMZ 포럼, 터너재단, 국제두루미재단 등의 국제 그룹과 학계가 DMZ 연합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은진, "DMZ 보전 패러다임의 전환", 『경기논단』 2008년 봄호, 경기개발연구원, p. 134. 참조.

성 및 동북아 경제권 배후 시장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높은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세계에 마지막 남은 동서 냉전의 산물이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야생의 낙원으로 변화해 온 세계사적 유물로 평가된다. DMZ 내에는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파괴가 있었으나 그 자체가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DMZ는 선사시대의 유적은 물론이고 삼국시대에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격전지로, 후삼국시대에는 궁예의 유적지로, 한국전쟁의 격전지였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특징짓는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융합된 지역이기도 하다.

정부는 5개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중점과제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일반과제로 포함시킨 바 있다.⁸⁾ 그러나 접경지역 개발 논의는 각 부처별·지역별로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다. 정부기관별로는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통일부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단체별로도 인천권, 경기권, 강원권 등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DMZ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부족하며, 부처별·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간 충돌 및 중복 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통일부 등의 부처에서 관광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반면, 환경부, 국방부 등 부처는 보호·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처별·지역별로도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DMZ 일원을 세계적 관광 명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⁹⁾

< 접경지역 개발 논의 >

부처별	환경부	- DMZ에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	- 평화·생태지대(Peace & Life Zone, PLZ) 관광 자원화 계획
	행정안전부	- 초광역개발권 구상으로, DMZ 인근 평화적 이용 계획 수립
	통일부	- 남북 평화 화해 협력기지 개발 종합 계획
지역별	인천권	- 북도관광테마파크 조성 -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남북 상생 발전을 위한 나들섬 조성
	경기권	- 통일경제특구 조성 및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 추진 - 녹색성장 전시 및 컨벤션 사업 기반 구축
	강원권	- 평화산업단지 및 평화문화관광 조성 사업 추진 - DMZ 생태탐방타운 및 평화생명동산 사업 추진

8)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2008, p. 14. 대선 공약을 통해 DMZ 생태공원 조성의 의미를 “전쟁과 분단, 대립의 현장”을 “생태계의 생명력을 인류 사회의 평화로움으로 승화시키는 현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밝힘. DMZ 일대(한탄강, 임진강 포함)를 UNESCO 지정 세계생태환경자연유산으로 등록하도록 북한에 제안하며, 세계생태환경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동식물 서식지를 자연 그대로의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할 것을 주장. www.hannara.co.kr

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 - DMZ 일원 관광활성화』 2010. 3. 2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분단국의 접경지역 개발 사례

중국-대만 사례 : 특구 개발

중국-대만은 접경지역의 특구 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였다. 중국-대만의 접경지역은 중국의 푸젠성(福建)과 대만의 마주(馬祖), 진먼(金門)섬이 가깝게 위치하여 대만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다. 중국의 푸젠성 샤먼과 대만의 진먼은 제일 가까운 직선거리가 2km에 불과해 불법 왕래와 밀수가 빈번히 일어나던 지역으로, 군사지역으로 분류되어 대만 본섬 주민도 진먼섬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했다. 대만은 2001년 1월 1일부터 진먼섬, 마주섬, 평후제도 등 3개 섬과 중국 푸젠성 연해도시들과의 선박 및 항공기 직항 등에 대한 3통을 시험적으로 허용하는 소3통을 시행하였다. 3통은 중국과 대만 양안간의 전면적인 직접교역인 통상(通商), 수송을 하는 통항(通航), 서신왕래를 하는 통우(通郵)를 의미하며, 2008년 12월 15일 본격적인 3통 시대가 개막되었다. 푸젠성의 샤먼 경제특구와 대만기업투자구에 대한 대만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는 등, 간접적인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접경지역의 군사적·정치적 위협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¹⁰⁾

중국의 푸젠성은 對대만 경제협력에 있어 제일 먼저 개방된 지역으로, 1981년 대만 기업의 투자가 시작되었다. 중국은 1980년 8월 '광둥성 경제특구조례'를 비준하여, 광둥성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와 푸젠성의 샤먼에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對 대만 경제 협력의 주요 거점으로 푸젠 지역을 선정하여, 1989년 5월 푸조우, 하이창, 싱린 대만기업투자구 설립을 비준하고, 1992년 12월 지메이 대만기업투자구를 추가 설립하여 총 4곳의 대만기업투자구가 설립되었다. 2004년 3월 샤먼시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싱린 투자구는 지메이와 통합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한층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한편, 대만 정부는 2000년 4월 5일 '리도건설조례(離島建設條例)'를 제정하면서 그동안 군사 제한 지역으로 개발은 물론 대만인의 출입조차 어려웠던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법의 제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진먼과 마주섬의 개발이 가능함과 동시에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불법적인 왕래와

10) 장윤정, 『홍콩·대만·중국의 상호접경지역 협력사례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8. pp. 93~122 참고.

상거래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금지되어 있던 중국인의 진먼, 마주지역 방문과 상업행위를 허가함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지연과 혈연으로 맺어져 있던 양 지역의 상호교류를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리도건설조례는 진먼, 마주 지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제10조), 해당 지역의 적절한 개발을 위해 해마다 군사시설 존재 여부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군사시설을 이전하도록 규정(제11조)하고 있다. 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 ‘離島개발건설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5조), 양 지역 주민은 타 법에 구애받지 않고 양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

동서독 사례 :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개발

동서독은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과 방문 및 주민들의 분단 고통 완화를 위해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973년 추가의정서를 통해 접경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접경위원회는 동서독간 경계선 획정 뿐 아니라, 분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 논의하였으며, 자연재해방지, 수자원관리, 환경오염, 국토의 이용, 도로망 연결 문제 등을 토의하고, 이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국경지역 14개 지부에 국경정보교환소를 설치·운영하고,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대편 국가에 상주대표부 설치하였다. 한편, 국경지역에서의 공동 재난 방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1973. 9). 이는 국경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홍수, 산사태,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 폭발물 등의 사고 발생시 공동 대처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편 지역에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¹¹⁾ 1985년에는 국경 통과를 위한 10개의 도로, 8개의 철도, 2개의 내륙 운하, 3개의 항공로를 허용하였다.

구 동서독 접경지 북쪽의 샬 호수(Schaalsee)를 중심으로 펼쳐진 샬제 생물권 보호지구는 독일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구 동서독간의 국경선은 총 1,393km로 동서독간 국경지역의 그뤼네스 반트는 사람의 통행이 불허된 지역이었으며, 인적이 드물어 많은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로 전환되었다. 1989년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내독간 국경선은 환경보호

11) 구동독 지역의 공장이나 도살장, 목장에서 폐수가 서독 지역으로 흘러들어 하천이나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경우, 동독 측이 비용 문제로 정화 시설을 마련하지 않자, 서독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정화시설을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었음.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3. pp. 326~328.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생태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인 1986년부터 1989년 사이 동서독 정상은 접경지역에 대한 자연보호사업 협정을 체결하고, 1990년 9월 동독의 국립공원 프로그램에 의해 162km²의 면적에 달하는 샬제 지구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였다. 1998년 7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 162km² 넓이의 샬제 지역은 생물권 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부터 유네스코의 생물권보호지구 지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 2000년 1월 샬제 주변 경관보호지역을 포함한 302km²의 면적에 달하는 지역을 '샬제 생물권 보호지구'로 지정되었다.¹²⁾ 샬제 생물권 보호지구는 전체 302km² 면적의 53%인 163km²가 경작지, 55km²(18%)가 산림, 51km²(17%)가 초지, 27km²(9%)가 호수로 구성되어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 3개 지자체에 연계된 샬제 생물권 보호지구는 관리를 맡고 있는 안내센터인 팔루스(PAHLHUUS)를 중심으로 연간 5~6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소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멘 사례 : 접경지원 자원 공동 개발

1918년 북예멘의 독립 이후 북쪽의 공화정과 남쪽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바탕으로, 1972년 9월 국경지역에서 첫 충돌이 발생하였다. 1차 국경 충돌 후 휴전협정을 체결해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석유가 개발되는 국경 지대에서 남북예멘 군대가 충돌하게 되었다.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예멘은 4차례의 각료회담을 개최하였으나, 1988년 3월 이 지역에 양측 군대가 다시 집결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해 마리브와 샤브와 접경지역에 남북예멘 군대의 중앙검문소를 설치, 양 지역의 천연자원을 공동 개발한다는 원칙에 합의(타이즈 회담, 1988. 4)하게 되었다. 1988년 5월 4일 '남북예멘 공동합의서'에 의해 마리브와 샤브와 접경 지역 공동 사업 추진을 합의하여, 접경지역 2,200km²에 대한 비무장지대화 및 석유의 공동 개발에 합의하게 되었다. 1988년 11월 19일, 석유개발과 관련된 남북예멘 장관급회담 개최를 통해 석유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에 합의하였다. 이 협정에 의해 설립된 석유 개발 국영공동회사는 미국·러시아·프랑스·쿠웨이트 등의 회사들과 다국적 조합을 구성해 접경지역의 석유 탐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지리위원회 구성을 합의하고, 공동 투자 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공동개발지역은 남북예멘의 군사지역에서 제외되며, 남북예멘 석유장관은 개발, 기술, 재정, 운영 절차와 그 밖의 경제적 투자에 필요한

12) 한반도에는 설악산(1982년), 백두산(1989년), 한라산(2002년), 구월산(2004년), 신안 다도해(2009년), 묘향산(2009년) 등 6개 지역 지정(2009년 10월 현재)되어 있음. 손기웅 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통일연구원, 2010. p. 181.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합의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합의 내용이 남북간 경계선의 설정이나 국경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예멘의 석유 매장량은 북예멘 지역에 10억 배럴, 남예멘 지역에 35억 배럴, 남북 예멘의 국경지대에 5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어 남북예멘은 상호 협력해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남북예멘 국민들은 석유 개발에 따라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었다.¹³⁾

시사점과 과제

각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중국·대만은 중국 공산정부 수립 후 장기간의 군사 대립을 거쳐 198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경제적 통일 전략과 대만의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에서 접경지역 특구 개발 진행하였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 제고를 통해 경제 교류에서 인적·물적 교류 등 교류 협력 전반에 걸친 활발한 상호 교류로 발전하게 되었다. 양국은 상이한 정치 이념과 제도로 갈등을 겪었으나,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안정적 교류·협력 추진하게 되었다(중국 : 광둥성 경제특구조례, 대만 : 리도 건설조례).

동서독의 경우 서독이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접경지역 지원을 시행하여 동서독간 긴장 완화 및 교류 협력을 촉진하게 되었다.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 접경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서독간 경계선 획정 뿐 아니라 자연재해 방지, 환경 오염, 도로망 연결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접경위원회는 국경지역 14개 지부에 국경정보교환소를 설치·운영하고,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대편 국가에 상주대표부 설치하였다. 특히, 접경위원회를 통해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일 이후 생태환경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을 통해 통일 전후의 정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예멘은 국경 지역의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공통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접경지역 개발 및 통일을 달성하였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접경 지역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공동 개발의 필요에 의해 공공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국의 회사들과 다국적 조합을 구성해 석유 개발을 진행하였다.

13) 김국신, 『예멘 통합 사례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89.

< 분단국 접경지역 개발 사례 >

	중국·대만	동서독	남북예멘
개발 유형	특구 개발	생물권 보전 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
근거 규정	중국 : 광동성 경제특구조례 대만 : 리도건설조례	동서독 기본조약 및 추가의정서	남북예멘 공동합의서
협력	제도적 지원을 통한 양안간 교류 협력 활성화	접경위원회 설치	공공지리위원회 설치
교통망 연결	샤먼-진먼간 해저터널 또는 다리 건설 계획	국도 10개, 철도 2개, 내륙운하 2개, 항공로 3개	카타비-두라인간 연결 도로 건설
해당국	대만 다소 소극적	동독 소극적	상호 적극적

접경지역 개발 과제

한반도의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접경지역 종합 개발을 통한 남북 상생 구조 구축이라는 기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이해 관계 조절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총괄 계획을 주도하면서, 접경지역 개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간의 계획들을 총괄 조정해야 한다. 동 조정위원회를 통해 남북간 공동 개발 추진을 위한 합의 도출 및 남북간 조정위원회 설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남북간 접경지역 개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공유와 이에 바탕한 남북간 접경지역 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의 접경위원회나 남북예멘의 공공지리위원회와 같은 합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천권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 특구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개성공단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특구 개발을 통해 중국·대만과 같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만이 특구 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 바와 같이, 접경지역 특구 개발은 남한의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추진이 가능하다. 넷째, 강원권을 중심으로 한 생물권 보전지역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동서독 접경지역의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같은 생물권 보전지역 개발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지정된 대부분의 생물권보전지역은 각국에서는 국립공원관련법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며¹⁴⁾, 각국의 관할지역은 각

1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현찬, 『DMZ 일원 자연환경보전 생태관광 추진방향 설정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 pp. 128~146. 참조.

국의 국내법으로 먼저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지정 후에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국립 공원은 중장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지구와 연계한 대규모 관광 특구로 발전할 수 있다. 다섯째, 경기권을 중심으로 한 태양열에너지 단지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예멘이 자원 개발의 필요에 의해 접경지역을 개발한 바와 같이 북한의 에너지난과 남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태양열에너지 단지 개발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 접경지역 개발 과제 >

기본 방향	접경지역 종합 개발을 통한 남북 상생 구조 구축
선결 과제	1) 접경지역 개발 조정위원회 구성 : 각 부처 및 지자체 간 계획 총괄 조정
	2) 남북간 접경지역 개발 공감대 형성 : 남북 접경지역 관리 위원회 등 합의체 구성
세부 추진 과제	1) 인천권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특구 개발
	2) 강원권을 중심으로 생물권 보전지역 개발
	3) 경기권을 중심으로 태양열에너지 등 녹색에너지 단지 개발